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호귀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0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3. 4.

발의자 : 이호귀, 박남순, 최민숙  
이관수(이상4인)

### 1. 제안이유

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,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사용료 반환에 대한 내용 신설(안 제13조 제4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소비자기본법」,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“(수수료 징수 등)”을“(사용료 등)”으로 하고, 제13조제1항 중 “이용료”를 “사용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용료”를 “사용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용료”를 “연회비 및 사용료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이용 개시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
2.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환급
3. 그 밖의 사용료의 반환은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수수료 징수 등) 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회비 및 <u>이용료</u> 등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<u>이용료</u>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<u>이용료</u>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3조(사용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 <u>사용료</u>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사</u> <u>용료</u>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<u>연회비 및 사용</u> <u>료</u>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연회비를 제외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이용 개시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</u></p> <p>2. <u>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환급</u></p> <p>3. <u>그 밖의 사용료의 반환은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.</u></p>

## 【참고 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### □ 소비자기본법

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·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.

### □ 소비자기본법 시행령

제8조(소비자분쟁해결기준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

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소비자단체·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